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5-926호****지역주택조합 사업종결 총회 미개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종결 여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같은 법 제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에 따라 시정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4. 24.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 1. 공고내용: 지역주택조합 사업종결 총회 미개최에 따른 시정명령

가.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공고대상: (가칭)신대방2단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가. 모집 신고일: 2022. 09. 23.

나. 사업 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75-83번지 일대

다. 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0, 3층

## 3. 공고기간: 2025. 4. 24.(목) ~ 2025. 5. 8.(목)

## 4. 공고장소: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주택과 (e-mail: chan47@ga.go.kr, ☎02-879-6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공시송달 내용

1.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7~9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6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체납 시 같은 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등)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녹색환경과(☎ 02-879-6264)